

「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일부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기금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기금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재정비(안 제6조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민간전문가 참여 신설(안 제9조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신설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